

[경남새일 공고 제2026-50호]

#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

## 참여기업 모집 공고

[창원시, 김해시, 거제시]

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」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9일  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청년여성 대상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지역정착 유도
- 사업기간 : 2026. 6월 ~ 12월
- 지원대상 :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
- 모집현황 : 4개 기업모집, 청년여성 4명(기업별 1명 지원)

(단위: 명)

구분	합계	창원시	김해시	거제시
합계	4	1	1	2
전일제	2	-	-	2
시간제	2	1	1	-

- 지원기간 : 2026년도 기한 내 기업별 최대 6개월 지원
-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	비고
참여기업	인건비	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	10%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
	청년여성	교통비 월 10만원 역량강화 직무역량강화 교육, 직장내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, 자격증 취득 등	

2

참여자격

참여 기업	필수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,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</li> <li>▶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,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</li> <li>▶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</li> </ul>
	일자리 성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</li> <li>▶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</li> </ul>
	제외 (배제)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화·방문고객 단순 상담, 카페·마트,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接客·판매, 건설·생산현장 단순 노무,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,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</li> <li>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공공기관 포함)</li> <li>▶ 자치단체, 위탁·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</li> <li>▶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</li> <li>▶ 지방세,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</li> <li>▶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</li> <li>▶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신규 선정 배제 가능</li> </ul>

청년	필수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연령기준 : 만 39세 이하(2026. 1. 1. 기준)</li> <li>▶ 고용상태 : 미취업자(실업자+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 - 근무시작일 기준 미취업자(4대 보험 미가입자)</li> <li>▶ 지역요건 :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(주민등록 유지 필요) -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</li> </ul>
	제외 (배제)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(단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·야간대학·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)</li> <li>▶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</li> <li>▶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(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)</li> <li>▶ 최근 3년 중, 2년 이상 중앙부처·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(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준용)</li> </ul>

###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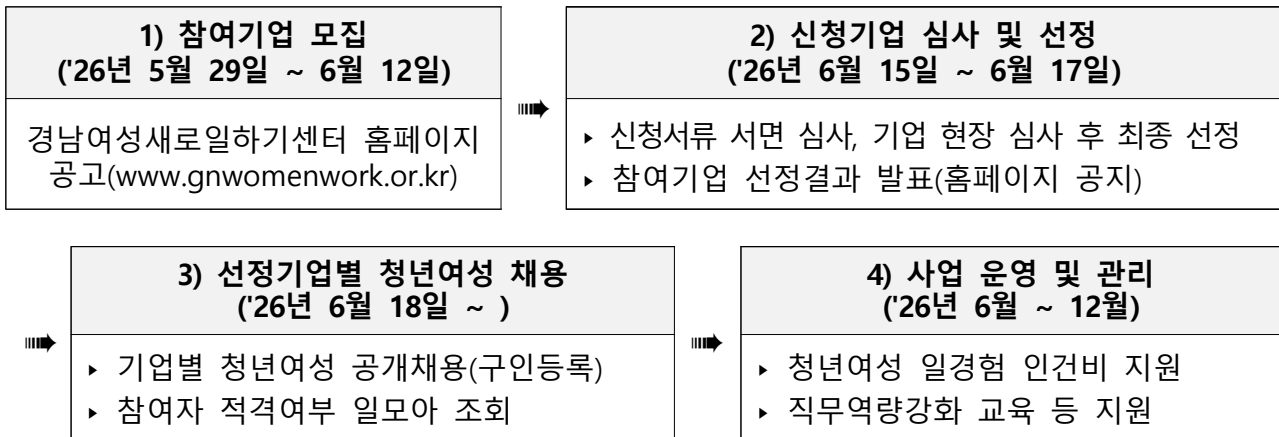
###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

- 평가방법 :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기준 : 정량적 평가(60점), 정성적 평가(40점), 가점, 감점
- 평가항목 : 재정건전성, 기업역량 및 근로환경, 고용유지 가능성 등

구 분	평가 기준 및 배점
평가항목	▶ (정량) 재정건정성(20점), 고용현황 및 추이(20점), 임금수준(10점), 채용형태(정규직, 비정규직)(10점)
	▶ (정성)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(10점), 직무내용 적절성(10점),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(10점), 장기근무 지원방안(10점)
	▶ (가점) 청년·여성·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(1~3점), 서류제출 성실도(1~3점)
	▶ (감점) 연속참여 기업(△10점)
	▶ (기업체 방문) 사업장 현황확인(3점), 청년 적합형 직무(3점),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(3점)

### 4

### 일정 및 추진 절차



※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5

### 참여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5. 29.(금) ~ 6. 12.(금) 18:00 접수분까지
- 신청방법 : 지역별 접수기관 방문이나 등기우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
- ※ 방문·등기우편은 평일 운영시간(09:00~18:00) 내 접수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,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

○ 기업 소재지별 접수기관

모든 지역접수	접수기관명	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
	홈페이지/연락처	www.gnwomenwork.or.kr / 055-286-1671
	이메일 주소	job15883475@hanmail.net
	방문·우편 주소	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, 2층

○ 제출서류 ※ 6~10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만 인정

- 관련문의 :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(☎ 055-286-1675, 1588-3475)

	제 출 서 류	발급 또는 작성요령	비고
1	사업 참여 신청서		서식 1
2	사업 수행 계획서	▶ 사업장 작성 및 제출	서식 2
3	참여기업 확인서		서식 3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서식 4
5	사업자등록증	▶ 법인인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	
6	표준재무제표	▶ 조회기간 2024년~2025년	홈택스
7	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▶ '26년 발급일 기준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8	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		국민건강 보험공단
9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	▶ 조회기간 '25년 1월 ~ 발급일까지	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10	지방세 납세증명서		정부24 또는 위택스
11	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	▶ 가점 해당 시 제출 (미증빙 시 미인정)	해 당 시

- 참여 신청 후 미선정된 기업은 향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(별도 안내)
-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
- 참여기업에서는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(워크넷) 사이트나 일자리센터(새일센터 등)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
- 기업당 1명씩 지원하며, 직무성격 및 청년의 상황 등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 근무형태 선택 가능함(전일제는 1일 8시간, 시간제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)
-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·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함
-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(1년이내)
-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(주민등록)를 유지해야 하며,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함
- 청년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여 참여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하되, 최저임금 이상(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 제외) 지급해야 함
-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부담 제세가 포함되며,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
- 인건비 및 교통비는 근로자 결근 시 출근일수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함
-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함
-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하며(기업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),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함
-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
  -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(주민등록)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
  -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
  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
  - 참여기업이 청년여성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
  -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  - 참여기업이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,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



## 서식2

## 사업 수행 계획서

###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

기업 정보	기업명			업종			
	주소						
채용 인력	근무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일제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간제 (주	시간)	채용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직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직
	월 급여	세전	원				
기업소개		※ 회사 소개, 사업장의 비전, 발전방향 등					
참여자 수행 직무내용		※ 주요 업무					
근로환경							
관리계획							
역량강화 지원내용							
장기근무 유도 지원방안							
사진		※ 회사 전경사진 또는 근무환경이 나타나는 사진(2장 이상)					

**서식3****참여기업 확인서**

[기업명 : \_\_\_\_\_ ]

본 사업장은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,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※ 해당여부 택1 하여 “O” 표기

	확 인 사 항	해당여부	
		해당	미해당
1	소비·향락업체 또는 임시 및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		
2	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기업(기업부도, 법정관리 중인 기업)		
3	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		
4	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기업		
5	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		
6	근로기준법(근로계약서 작성, 법정휴가 보장 등) 미준수 기업		
7	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		
8	자치단체, 위탁·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기업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		
9	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		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확 인 자(대표자) :

(날인 또는 서명)
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

## 서식4

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 15조, 제17조, 제24조에 따라 신청 사업장(임직원 포함)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.

### 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	① 사업 참여(지원금 지급 등) 대상인 청년의 선발 ② 채용, 근무, 교육, 급여지급, 청년 근로자의 관리·감독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·창업 지원 ④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(연구·설문조사 포함)
수집항목	① 인적사항 : 성명, 전화번호(주택, 휴대폰), 주소, 가족관계, 최종학력 ② 고용보험가입여부(취업확인)
보유 및 이용기간	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(회계서류 보존, 사용(경력)증명서 발급 목적)
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	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
### 2.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

고유식별정보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목적	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, 지원제의 사유 조회, 고용보험 가입 이력 ② 참여자 관리, 「고용정책기본법」에 따른 정보전산망,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·창업 지원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 활용
보유 및 이용기간	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(회계서류 보존, 사용(경력)증명서 발급 목적) ※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.
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	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
### 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
제공받는 자	경상남도, 시군, 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, 기타 법령에 의한 요구자
제3자 제공정보 항목	① 성명, 주민번호, 전화번호(주택, 휴대폰), 주소 ② 가족관계, 지원금액, 고용보험가입현황(취업확인)
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	참여기업 및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,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
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	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: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기타기관 :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
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	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
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서명
본인(대표, 청년 등)			
임직원			

2026년    월    일
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